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요령

2014. 6.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I. 업무처리요령 개요	1
II.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 흐름도	4
III.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 적용	6
IV. 홈페이지 저작물 관리	8
V. 향후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안내	9
1. 국유재산·공유재산 저작물의 자유이용 확대	9
2. 공공기관 저작물의 자유이용 확대	10
3. 계약에 따른 저작재산권 귀속 시 권리 명확화	11
붙임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관련 법령	16
2.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예시)	18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지원 기관	19

I 업무처리요령 개요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지금까지 법령·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 7월 1일 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이용 가능

2. 목적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시행('14.7.1)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등에서의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시

3. 적용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4. 자유이용 저작물의 범위

- 국가·지자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공공누리 표시를 적용한 저작물

※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공공저작물 예시

- 어문저작물 : 안내책자, 연구보고서, 보고서, 간행물, 보도자료, 평론, 논문, 학습물, 칼럼 등
 - 음악저작물 : 홍보음악, 기관 주제가 등
 - 사진저작물 : 풍경, 인물 등
 - 도형저작물 : (특수한 목적으로 창작성이 가미된)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약도 등
 - 편집저작물 : 간행물, 사전, 홈페이지,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 연극저작물 :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등
 - 미술저작물 : 홍보만화, 기관 로고, 공모전 포스터, 캐리커처, 도안 등
 -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로서 다양한 사례 존재(저작물에 대한 상담 : 저작권 안심 콜센터 ☎ 1800-5455)

5. 자유이용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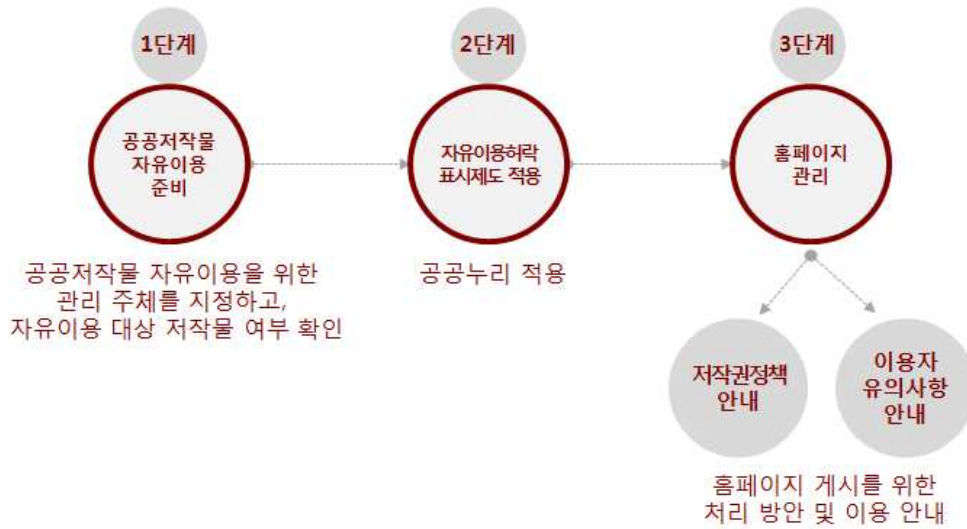
-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원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에 의한 이용도 가능(「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36조 제1항)

6.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II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 흐름도

1. 단계별 업무의 유형 및 내용



2. 관리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별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행을 위하여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 저작물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홈페이지 담당부서 등을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관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한 관리 담당자의 지정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관리를 위한 총괄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
- 총괄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 각 공공저작물을 작성한 담당부서, 계약 업무 담당자등 관내 타 부서의 관계자들과 상호 간 긴밀하게 연계 및 협력 체계를 마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관련 업무 협조 및 연계, 정보 공유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총괄 담당자 (또는 총괄 부서)

- ✓ 각 부서 및 계약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

3.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 여부 확인



현재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는 개방지원 사업을 통해 기관 신청 시 무료로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 여부 확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신청 문의 : 1670-0052)

4. 공공누리 적용 및 홈페이지 게시

-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여 홈페이지 게시
- 홈페이지에 게시 시에 저작권정책 고지


III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 적용

1. 필요성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국민들이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시기준 필요
-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표시 기준(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하여 공개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제5호)

* 공공누리 제1유형 개요

이용허락 유형 및 표시	이용허락 범위	적용 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창작 저작물(직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업무에 속하여야 함) ○ 저작물의 저작권이 100%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귀속된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특약도 체결한 저작물)

* 공공누리 제2~4유형(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상업적이용 및 변경금지)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2. 공공누리 적용 방법

(1) 적용 원칙

-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하여 공개

적용대상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기관에서 전부 보유한 경우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 "공공누리" 표시 적용 공개
공공기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기관에서 전부 보유한 경우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 "공공누리" 표시 적용 공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법률의 규정에서도 공공데이터에 해당 하는 공공저작물은 민간 개방을 통해 이용활성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개방 유형별 적용 방법

- (공공누리 부착 및 이용조건 명시)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공공누리 표시 부착 및 이용조건 명시

유형	적용 방법
<p style="text-align: center;">온라인 (홈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저작물이 서비스 되는 웹페이지 하단에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누리 표시 다운로드)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cl.or.kr)에서 (공공누리 소개 > 공공누리 유형안내)에서 다운로드 - (부착 방법) 홈페이지 게시물 중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별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위치 및 관련 문구는 기관 특성에 맞게 작성 가능) <div style="text-align: center;">  <p>[예시]</p> </div> <p>※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cl.or.kr)에서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오프라인 (책자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행물 오른쪽 상단에 국립중앙도서관 가이드라인(정부간행물 납본 지침 2013.9, 국립중앙도서관)에 따라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누리 표시 다운로드)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cl.or.kr)에서(공공누리 소개 > 공공누리 유형안내)에서 다운로드 - (부착 방법) 간행물의 우측 상단(위쪽 1cm, 오른쪽 1cm 공간 배정)에 표준화된 크기의 공공누리 표시 부착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 통계” 예시] 제1유형(4cmx1.5cm)</p> </div>

IV 홈페이지 저작물 관리

1. 관리 원칙

-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인지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하여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공공누리 1유형’을 적용하여 게시

2.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의 게시

구분	내용
기존 게시 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자유이용대상 공공 저작물인지 파악하여 공공누리 적용 여부 판단- 자유이용대상이 아닌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누리 부착 외의 저작물은 자유이용 대상이 아님을 안내해줄 필요가 있음(아래의 저작권 정책 변경 고시 예시 문구 참고)
신규 게시 저작물	사전에 저작권 관계를 파악하여 게시할 때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자유이용대상 여부 표시

3. ‘저작권 정책’ 변경 고지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안내 문구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행에 따라 예시를 참고하여 변경 고지(붙임 2 참고)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고지 시 고려 사항

- ‘공공누리 제1유형’ 만이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해당
-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자유이용 대상 제외
- 이용자의 출처표시 의무 준수 요청 등

1. 국유재산(국가) 또는 공유재산(지자체)의 자유이용 확대

- (목적) 정부 3.0 개방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자유이용이 제한되는 공공저작물을 최소화하여 개방 확대

※ 원칙적으로 공공저작물 중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

- (방향)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자유이용이 제한되는 저작물을 최소화하고, ▲이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
- (자유이용 저작물로의 전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 부착하여 개방

※ 전환 대상 가능 공공저작물의 예

- (1) 공익의 목적이나 민간의 활용도가 높은 경우 (예: 기관행사 영상자료)
- (2) 민간에 보급이 필요한 경우 (예: 지자체에서 제작한 지역관광안내책자)

2. 공공기관 저작물의 자유이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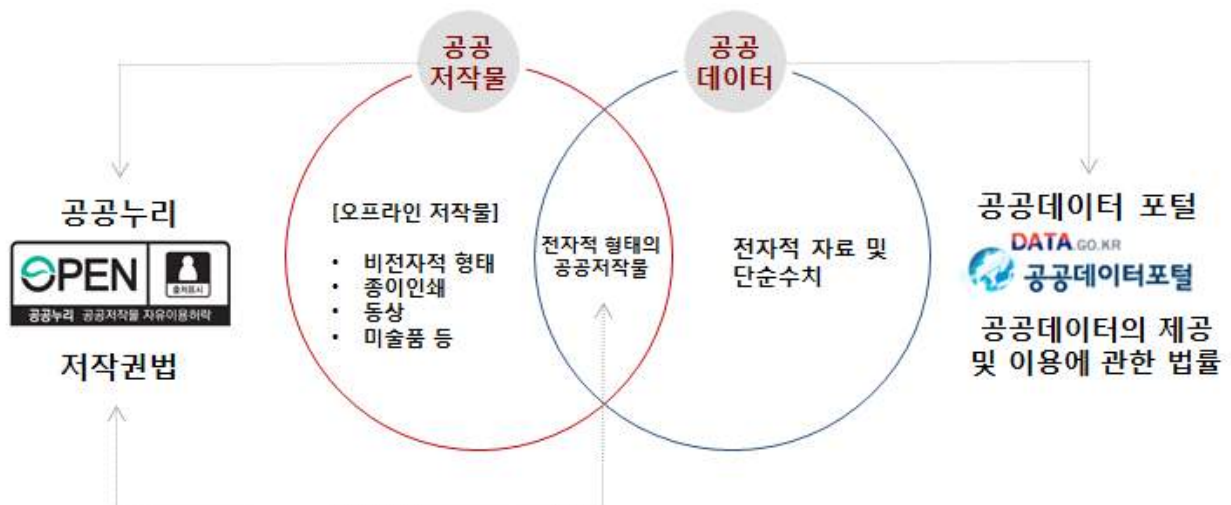
- (목적)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민간이용 촉진
- (방법)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공공누리)’ 를 적용하여 표시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자유이용 허용
- (근거) 국가는 공공저작물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 자유이용 시책의 주요 내용(저작권법 시행령)

-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문체부장관이 정한 표기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공공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은 개방 불가피

-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 등
- 공공데이터는 변경을 허용하고, 비영리적, 상업적으로 모두 이용 가능



3. 계약에 따른 저작재산권 귀속 시 권리 명확화

(1) 권리처리 명확화 필요성 및 방향

- (필요성)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계약단계에서부터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용역 결과물의 활용에 제약 발생
- (방향)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계약 시에 ▲국민들의 자유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적극 개방하고, ▲연구수행자(기관)에게 저작재산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필요한 일부 저작재산권만을 연구수행자(기관)에게 귀속
 - ※ 국가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 계약체결 시에 저작권의 전부를 수탁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할 것을 규정(「국유재산법」 제65조의12)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 일부인 복제권(예) 등을 귀속시키는 계약 체결은 가능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국가와 연구수행기관의 지식재산권 공유가 원칙(용역일반조건 제35조의1 제1항)이지만, 지식재산권 공유 시에는 저작물 자유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이 사후 활용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

(2) 유형별 권리처리 사례

가. (국민들의 자유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관이 연구수행자(기관)으로부터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활용 촉진

①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활용 및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

- (사례 1) 홍보 동영상 및 공익광고
- (사례 2) 관광유치 등을 위하여 자연경관에 대한 영상저작물 및 사진저작물 등
- (사례 3) 동식물 연감과 같은 각 지역의 동·식물관련 영상저작물 및 사진저작물 등
- (사례 4)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사용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 (사례 5) 연감·도록·백서 등 발간물
- (사례 6) 폰트(서체)
- (사례 8) 국가고시 및 외국의 법과 제도 등을 번역한 저작물 등과 같이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되면 국민의 이용이 제약되는 경우
- (사례 9) 간행물 제작을 위하여 촬영한 사진저작물
- (사례 10) 교육교재 및 교육개발제품
- (사례 11) 문화재를 촬영하여 홍보를 위한 영상저작물 및 사진저작물

② 국민에게 배포를 목적으로 창작한 저작물

-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책자 등
- (사례 2) 공공기관의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한 보도자료, 사보, 각종 홍보 안내자료 등
- (사례 3) 공공기관의 간행물 및 소식지
- (사례 4) 농수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제공되기 위하여 창작된 저작물

나. (연구수행자에 저작재산권 귀속이 필요한 경우) 공공저작물의 공동창작,
 연구수행자(기관)의 원천 기술의 보호 및 부가 가치 창출이 예견되는 경우
 에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연구수행자(기관)와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거나 연구수행자(기관)에게 필요한 저작권의 일부를 귀속

① 연구수행기관 등과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 저작재산권 공유

- (사례 1)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영상저작물을 공공기관의 담당자와 민간
 심리상담사가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②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연구수행 기관이 기획하고 창작한 저작물인 경우 → 저작권재산권 공유 또는 복제권·배포권 등 일부 저작권재산권을 연구수행자에게 귀속

(사례 1) 용역수행기관 등이 기금 등 공적재원을 지원받아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제작한 경우

③ 연구수행자의 추가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 또는 상품 개발이 예상되는 경우 → 저작권재산권 공유 또는 복제권·배포권 등 일부 저작권재산권을 연구수행자에게 귀속

(사례 1) 신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시 연구수행기관이 보유한 원천 소스가 사용되어 제품이 개발되는 경우

(사례 2) 용역을 통해 제작된 전통문화 에듀테인먼트 애플북을 제작기관이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이외로 추가 제작하여 배포·활용

(사례 3) (국립국악원) 작곡, 대본, 안무, 의례구성, 의상디자인, 소품디자인, 무대미술디자인, 도안디자인 등 주요 용역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의 사후 활용을 적극 허용

(사례 4) (디자인) 전통문양을 활용한 섬유디자인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촉진을 위한 계약서 조항(예시)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물들을 별다른 저작권 문제없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조항들이 계약서 내용에 반영 필요

구분	조문 (예시)
<p>저작권 등 기관에게 양도되는 경우(공통)</p>	<p>제○○조(저작권 양도 등) ① “연구수행기관 등” 이 본 연구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의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을 “공공기관” 에게 양도한다. ② “연구수행기관 등” 이 본 연구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 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영상저작물 특례</p>	<p>③ 본 연구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가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 및 제100조 및 제101조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p>
<p>초상권</p>	<p>제○○조(초상권) 연구수행 기관은 본 연구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p>	<p>제○○조(지식재산권 양도 등) ① “연구수행기관등” 이 본 연구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의 저작권을 “공공기관” 에게 양도한다. (단, 새로운 유형의 SW용역 계약의 경우 “연구수행기관등” 에게 저작권 중 복제권·배포권(예시)은 제외한다.)</p>

구분	조문 (예시)
	<p>② 후속적 이용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기관등”은 “공공기관”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연구수행기관등”의 이용허락신청에 대하여 후속적 이용의 목적 등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거절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기간은 “연구수행기관 등”과 “공공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p> <p>④ “연구수행기관등”이 본 연구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¹⁾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 영상, 사진 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통조항을 참고

※ 영상 저작물은 공통조항 외에 영상저작물특례, 초상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통조항 외에 초상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사진저작물의 경우 미술저작물 등을 사진으로 찍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저작권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5.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저작권법」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예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044-000-0000

붙임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지원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2, 2486)

□ (재)한국문화정보센터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확산을 위한 ▲ 저작권 권리관계 확인, ▲ 공공저작물 관리와 관련된 상담, 교육 실시 및 ▲공공누리 운영 총괄 등
※ 담당부서 : 공공사업부 ☎ 02-3153-2872~7, 공공누리 포털 (www.kogil.or.kr)
※ 개방지원사업 대표전화 : ☎ 1670-0052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안심 콜센터) 한 번의 상담으로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 해결
※ 대표전화 : ☎ 1800-5455
- (저작권 등록) 저작물의 등록 및 권리 변동사항 등록

▶ 저작권 등록의 효과

- 저작자로 실명 등록된 자는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저작권법」제53조)
- 침해행위 발생 전 등록 시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부여

※ 담당부서 : 저작권등록 (www.cros.or.kr, ☎ 02-2660-0001~0005/7)

- (분쟁 조정)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으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 담당부서 : 심의조정팀 (☎ 02-2660-0104)